

■ 목 차

■ 소식 ■

지평, '볼커룰(Volcker Rule) 시행과 한국 금융기관의 대응방안'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3
 지평, 미얀마 현지법인 사무소 이전 4
 배지영 변호사, Pinsent Masons LLP 두바이 사무소 파견 근무 6

■ 해외업무 사례 ■

[중국] 한국 금융소프트웨어개발업체를 대리하여 기술개발용역 계약 검토 자문..... 7
 한국 자동차부품업체를 대리하여 기술지원용역 계약 검토 자문 7
 한국 성형외과의 중국 진출 관련 계약 검토 자문..... 8
 한국 조명업체를 대리하여 중국 OEM 계약 작성 자문..... 8
 한국 외식업체를 대리하여 중국현지 가맹사업 관련 계약 검토, 지분양수도 자문..... 9
 한국 금융회사의 현지법인을 대리하여 리스채권 확보 자문 9
 한국 무역회사를 대리하여 중국법인을 상대로 대위변제 소송의 항소심 진행..... 10
 한국법인을 대리하여 중국법인이 제기한 특허 소송 자문 10
 [캄보디아] IBK기업은행의 캄보디아 대표사무소 개설 자문..... 11
 한국 건설회사의 캄보디아 자회사 감자 자문 11
 한국 IT서비스 회사의 캄보디아 자회사 주권 발행 자문 12
 한국 건설 회사의 캄보디아 JV 지분 매각 자문 12
 [라오스] 한국 법무부를 대리하여 라오스 증권법 제정 용역 후속조치 및 라오스 증권위원회 IOSCO 가입 지원 14

■ 해외업무 논단 ■

[중국] 11월 17일, 중국 '후강통' 정식 시행..... 15

[베트남] 기업법 및 투자법 개정.....18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최고인민법원, 인터넷 인신권 침해 민사분쟁 사법해석 발표.....27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상장회사 폐지제도 정식 발표.....27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개정안 공포, 외상투자 제한 대폭 감소.....28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발표, 지적재산권법원 관할 명시.....28

[캄보디아] 세무 등록에 관한 규정(PRAKAS on Tax Registration) 시행.....29

■ 소식 ■

지평, '볼커룰(Volcker Rule) 시행과 한국 금융기관의 대응방안'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법무법인 지평은 K&L Gates와 공동 주최로 지난 12월 12일(금)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100여 명의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볼커룰(Volcker Rule) 시행과 한국 금융기관의 대응방안'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K&L Gates 서울사무소 윤석주(Eric Yoon) 대표와 법무법인 지평 이행규 변호사가 '볼커룰의 개요와 국내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응방안'을, KDB 국제법무팀장인 박규찬 미국변호사가 '볼커룰의 역외적용 관련된 쟁점'을,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상제 박사가 '미국의 볼커룰 시행이 한국 감독 정책에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한국경제 - 법무법인 지평, '볼커룰과 한국 금융기관' 세미나(2014. 12. 3.)
- 법률신문 - 법무법인 지평, '볼커룰(Volcker Rule) 시행과 한국 금융기관의 대응방안' 세미나(2014. 12. 9.)
- The Korea Herald - 'Korean financial firms should prepare for Volcker Rule'(2014. 12. 14.)
- 국토일보 - "법무법인 지평-K&L Gates, 세미나 개최"(2014. 12. 15.)

[관련 사진]

법무법인 지평, '볼커룰(Volcker Rule) 시행과 한국 금융기관의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 소식 ■

지평, 미얀마 현지법인 사무소 이전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 현지법인 사무소가 12월 15일 이전하였습니다.

[미얀마 현지법인 주소 및 연락처]

Address No. 140/A, Than Lwin Road, Kamaryut Township, Yangon, Myanmar

Tel 95-1-510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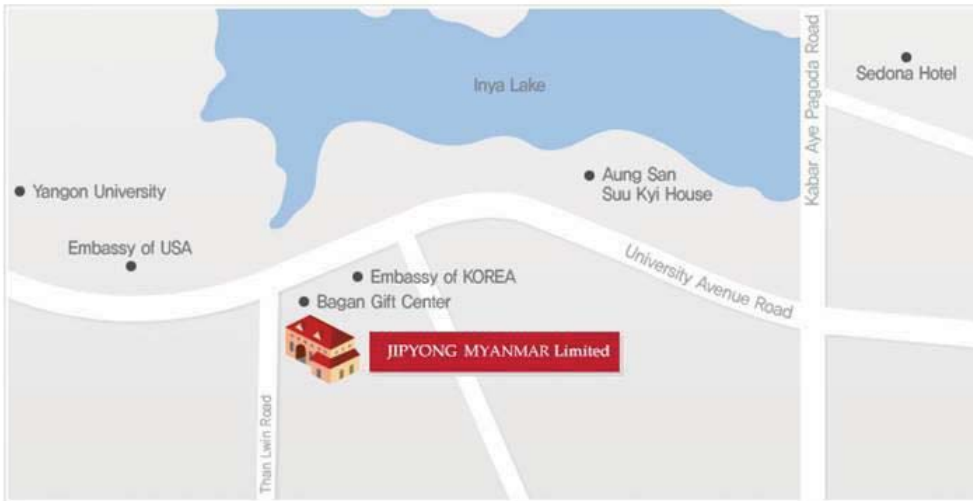
Fax 95-1-526381

E-mail myanmar@jipyong.com

Contact 장 성 수석자문위원(Tel. 95-94-2013-1641, schang@jipyong.com)

유정훈 변호사(Tel. 95-1-510366, yoojh@jipyong.com)

Location



지평 미얀마 현지법인인 JIPYONG MYANMAR Limited는 본사에서 파견된 한국변호사, 호주변호사, 한국회계사, 전문위원과 경험이 풍부한 미얀마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법률조사/번역 요원을 다수 보유하여 독자적인 현지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사 미얀마팀과 미얀마 현지법인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고객들에게 한국과 미얀마 현지에서 동시에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M&A,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인프라 사업에서부터 현지 합작투자, 법인설립, 인허가, 현지법인 운영 관련 법률자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소식 ■

배지영 변호사, Pinsent Masons LLP 두바이 사무소 파견 근무



(법무법인 지평 배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배지영 변호사가 지난 12월 14일부터 세계적인 영국계 로펌인 Pinsent Masons LLP 두바이 사무소에서 파견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 해외업무 사례 - 중국 ■

한국 금융소프트웨어개발업체를 대리하여 기술개발용역 계약 검토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금융소프트웨어개발업체를 대리하여 기술개발용역 계약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정철 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한국 자동차부품업체를 대리하여 기술지원용역 계약 검토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자동차부품업체를 대리하여 기술지원용역 계약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정철 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한국 성형외과의 중국 진출 관련 계약 검토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성형외과의 중국 진출 계약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경호 변호사 임승혁 회계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한국 조명업체를 대리하여 중국 OEM 계약 작성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조명업체를 대리하여 중국 OEM 계약 작성 관련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이민희 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남유선 미국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한국 외식업체를 대리하여 중국현지 가맹사업 관련 계약 검토, 지분양수도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외식업체를 대리하여 중국현지 가맹사업 관련 계약 검토, 지분양수도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경염동 중국변호사 채광호 중국변호사

한국 금융회사의 현지법인을 대리하여 리스채권 확보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금융회사의 현지법인을 대리하여 리스채권 확보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부응 중국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한국 무역회사를 대리하여 중국법인을 상대로 대위변제 소송의 항소심 진행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무역회사를 대리하여 중국법인을 상대로 대위변제 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경염동 중국변호사 부응 중국변호사

한국법인을 대리하여 중국법인이 제기한 특허 소송 자문

법무법인 한국법인을 대리하여 중국법인이 제기한 특허 소송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경염동 중국변호사 부응 중국변호사

■ 해외업무 사례 - 캄보디아 ■

IBK기업은행의 캄보디아 대표사무소 개설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IBK기업은행의 캄보디아 대표사무소 개설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IBK기업은행은 12월 16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사무소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관련 기사]

- 매일경제 - 기업은행, 캄보디아·인도네시아에 사무소 개소(2014. 12. 16.)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김형근 변호사



CHEA Somala
캄보디아 변호사

한국 건설회사의 캄보디아 자회사 감사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건설회사의 캄보디아 자회사 감사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진숙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김형근 변호사



CHEA Somala
캄보디아 변호사

한국 IT서비스 회사의 캄보디아 자회사 주권 발행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IT서비스 회사의 캄보디아 자회사 주권 발행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김형근 변호사



CHEA Somala
캄보디아 변호사

한국 건설 회사의 캄보디아 JV 지분 매각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건설회사의 캄보디아 JV 지분 매각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김형근 변호사



CHEA Somala
캄보디아 변호사

■ 해외업무 사례 - 라오스 ■

한국 법무부를 대리하여 라오스 증권법 제정 용역 후속조치 및 라오스 증권위원회 IOSCO 가입 지원

법무법인 지평은 라오스 정부에 증권법 제정을 위한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제공하여 라오스 증권법이 2013년도에 발효된 데에 이어, 라오스 내 자본시장 관련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고 현재는 라오스 증권위원회의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가입 지원 자문을 추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자본시장 성장 경험을 라오스와 같은 개발도상국에 전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 법무부의 법무한류(K-Law) 사업에 기여하고 한국과 라오스간의 자본시장 교류에 일조할 수 있는 공익적 목적도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이은영 변호사



반기일
뉴질랜드변호사

■ 해외업무 논단 - 중국 ■

11월 17일, 중국 '후강통' 정식 시행



(법무법인 지평 장욱염 중국변호사)

2014년 11월 17일, 오랜 기간 준비하여 온 '후강통'이 정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후강통'이란 중국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홍콩 증권거래소 간의 증시 교차매매를 허용하는 정책으로, 상하이 및 홍콩 투자자는 현지 증권사를 통하여 규정된 범위 내에서 상대방 거래소의 상장 주식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강통을 세분화하면 다시 '후구통'(滬股通, Northbound)과 '강구통'(港股通, Southbound)이 포함됩니다.

'후구통'이란 투자자가 홍콩중개상에게 위탁하면, 홍콩 증권거래소 회원증권사가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이를 신고하고 규정된 범위 내에서 상하이 증권거래소의 상장 주식을 구매하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후구통의 투자대상 종목은 '상증(上證) 180' 지수와 '상증(上證) 380' 지수의 구성 종목, 상하이 A 및 홍콩H 동시상장 종목입니다. 단, 그 중 B주 및 ST 종목(리스크 종목)은 제외됩니다. 상하이 증권관리감독위원회는 후구통 투자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구통'이란 투자자가 중국 본토 증권회사에게 위탁하면, 상하이 증권거래소 회원증권사가 홍콩 증권거래소에 이를 신고하고 규정된 범위 내에서 홍콩 거래소의 상장 주식을 구매하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강구통의 투자대상 종목은 항생종합대형지수 구성 주식, 항생종합중형지수 구성 주식, 상하이 A 및 홍콩H 동시상장 종목이나 그 중 홍콩 달러로 거래되지 않는 주식과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제외됩니다. 홍콩 증권거래소는 강구통 투자자에 대하여 기관투자자

및 주식계좌에 50만 위안 이상의 잔액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거래통화는 후구통, 강구통 모두 인민폐로 거래됩니다.

후강통제도에는 인민폐 거래한도가 있습니다. 이는 개별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아닌, 후강통으로 투자하는 전체 금액의 한도를 의미합니다. 상하이 주식시장에 대한 총 투자한도는 3,000억 위안, 홍콩 주식 시장에 대한 총 투자한도는 2,500억 위안입니다.

중국 정부는 후강통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중국 본토의 자연인이 홍콩 시장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차액에 대하여서는 면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본토와 홍콩 간의 세수협정에 따르면 홍콩 시장 투자자(기업 및 개인)가 상하이 시장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차액에 대하여서는 소득세, 기관투자자일 경우 영업세가 면제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후강통제도는 중국 자본시장 개방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두 지역의 자본시장 연결을 강화하고 자본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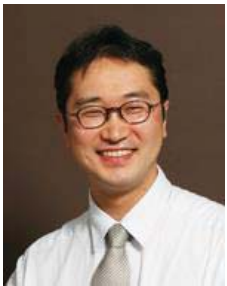
첫째, 후강통제도의 시행으로 본토와 홍콩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투자경로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시장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으며 새로운 협력시스템의 도입으로 중국의 자본시장의 종합적인 실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상하이 및 홍콩의 금융 허브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 유리하며 후강통제도의 시행은 상하이 및 홍콩 시장에 대한 국제투자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상하이 시장의 투자자 구조를 개선하여 상하이를 국제금융허브로 육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홍콩은 중국 본토 투자자의 중요한 해외투자시장으로 부상하게 됨으로써 홍콩의 국제금융허브의 지위도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인민폐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홍콩을 (중국)역외인민폐업무센터로 발전시키는데 유리하게 되어 중국 본토 투자자는 인민폐로 홍콩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역외 인민폐 자금의 투자 경로가 한층 확대되어 인민폐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해외업무 논단 - 베트남 ■

기업법 및 투자법 개정



(법무법인 지평 정정태 변호사 ·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베트남 국회는 지난 11월 26일 18개의 법률과 11개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중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투자법, 기업법, 주택법, 부동산사업법의 개정입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이 개정되었고, 아직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법률 해석과 집행의 방향성에 대해 판단하기에는 이릅니다. 이들 개정 법률은 모두 2015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므로, 그때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 추이와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 법률 중 투자법과 기업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이로 인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호에서 주택법과 부동산사업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정 투자법

(1) 외국인 투자법인의 정의

개정 투자법은 투자 및 법인 설립 인허가 절차에서 특별한 취급을 받는 외국인 투자법인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① 외국인 투자자가 정관 자본금의 51% 이상을 출자한 법인
- ② 위 ①의 법인이 정관 자본금의 51% 이상을 출자한 법인(즉, ①의 자회사)
- ③ 외국인 투자자와 위 ①의 법인이 정관 자본금의 51% 이상을 출자한 법인

그런데 위와 같은 개념 정의가 다른 법령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장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총 보유 지분 한도는 49%로 제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종래 외국인투자법인은 외국인 투자자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개정 투자법의 정의상 외국인이 51% 미만으로 출자한 현지법인은 상장회사에 대한 출자 지분 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 법인 설립 인허가 절차의 이원화

현행법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할 때에 그 출자 지분율에 상관없이 투자허가서(Investment Certificate)를 받아야 하며, 투자허가서가 법인 설립에 관한 증명서류, 즉 사업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의 역할도 같이 합니다. 이에 따라 투자허가서에는 (i) 법인의 인적 정보(상호, 주소, 자본금, 주주 등)와 (ii) 투자 프로젝트(사업 내용)에 관한 정보가 모두 기재됩니다.

개정 투자법은 인허가 절차를 이원화하여,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할 경우 먼저 투자허가서를 받은 뒤 별도로 사업등록증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의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투자허가서를 발급하고, 이후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허가서에는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만 기재되며, 법인 정보는 사업등록증에 기재됩니다. 투자허가서를 받는 절차도 2가지 경우로 구분되는데, (i) 부동산을 이용하는 프로젝트와 같이 몇몇 경우에는 먼저 원칙승인(In-principle Approval)을 받은 뒤 투자허가서를 받고, (ii) 그 외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칙승인 없이 바로 투자허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51% 이상 출자하는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투자허가서와 사업등록증 2가지 인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 점에서 종전보다 절차가 복잡해 졌습니다. 다만 투자허가서에 대한 법정 심사기간은 15일(원칙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로부터 5영업일)로 단축되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51% 미만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투자허가서를 받지 않고 사업등록증만 받으면 되므로, 순수국내법인과 같이 간이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목적 사업의 내용이 조건부 사업분야에 해당하면 외국인의 지분율에 상관 없이 투자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 유통, 부동산 등 267개의 사업이 조건부 사업분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실제 간이한 절차의 혜택을 받는 업종은 제조업 등 일부에만 국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투자허가서를 받고 설립된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법인이 새로이 사업등록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투자허가서와 사업등록증 신청 및 발급은 관할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전산망 등을 준비하는 데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기설립된 회사의 지분 취득 등록

앞서 설명드린 투자허가서 취득 절차는 원칙적으로 신규 법인 설립의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미 설립되어 있는 법인의 유상증자 또는 지분 인수를 통해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신규 설립의 경우와 동일하게 투자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투자허가서가 아닌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i) 지분을 취득하는 회사의 목적 사업이 조건부 사업분야에 해당하거나, (ii) 외국인이 51%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등 해당 거래로 앞서 살펴본 외국인 투자법인의 요건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이에 관한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관할기관의 등록에 관한 법정 심사기간은 15일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새로이 지분을 취득하는 대상회사가 기존에 투자허가서를 받았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신규 또는 변경 투자허가서를 취득하지 않고 별도 등록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 이해되지만, 투자허가서를 받지 않았던 순수국내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투자허가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지는 의문입니다. 등록 신청이 전자문서 형태로 가능한지도 불명확합니다. 개정법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세부규정이나 유권해석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개정 투자법은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위의 등록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사업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개정 기업법에 대한 부분에서 설명드릴 것처럼, 사업등록증에는 투자자에 관한 정보도 기재되므로, 그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업등록증의 변경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투자 실행 일정 연장

현행법상으로는 투자자가 투자 실행 일정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관할기관에서는 연장을 불허할 경우에만 15영업일 내에 서면 회신을 합니다. 즉 15영업일 내에 서면 회신이 없으면 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개정법은 연장의 허가 또는 불허가를 불문하고 관할기관으로 하여금 15영업일 내에 서면 회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5영업일 내에 아무 회신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허가가 간주되는 현행법보다는 투자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투자 실행 일정의 연장은 최대 24개월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5) BCC 운영사무소

현행법상으로는 외국인이 내국인과의 동업계약(BCC) 형태로 투자를 할 경우, 별도의 entity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외국인과 그 직원이 현지에서 상주하며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개정법은 BCC 형태로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운영사무소(Operating Office)를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등록에 관한 법정 심사기간은 15일입니다.

운영사무소의 활동 방식에 대해서는 세부 규정의 입법 추이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외국인 건설계약자가 설립하는 프로젝트관리사무소(Project Management Office)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독립된 법인격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별도의 인장과 세무번호를 발급받고 투자허가받은 범위 내에서의 영업 활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6) 부동산 프로젝트의 자본금 일부 예치 의무

현행 부동산사업법은 부동산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최소 정관자본금(60억 동)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부동산사업법과 주택법은 최소 정관자본금을 200억 동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 투자법은 부동산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가 총투자 자본금의 1~3%를 미리 예치(escrow)하도록 하고, 프로젝트 실행 정도에 따라 인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 역외 투자 관련 규정 신설

베트남 법인이 역외 직접 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의 요건과 절차, 관리 방법 등에 대해 종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사항이 개정 투자법에 명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외 투자를 위해 상공부(MOIT)의 투자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역외 투자를 제약하는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2. 개정 기업법

(1) 국영기업(State Owned Enterprises)의 정의 수정

현행법상으로는 국영기업은 정부 출자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개정법은 정부 출자 지분이 100%인 기업만을 국영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라도 지분을 민간에 매각(민영화)한 경우에는 더 이상 국영기업으로서의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2) 사업등록증의 내용 및 목적사업 기재 생략

개정법 하에서는 외국인 투자법인도 사업등록증을 받아야 함은 앞서 개정 투자법에 대한 부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사업등록증에는 현지 법인의 상호, 본점 주소, 법적 대표자, 투자자 및 정관 자본금에 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다만 여기서 “투자자”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사원(Member)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고, 주식회사의 주주(Shareholder)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에 대해서도, 창립 사원만 기재하는지, 이후에 유상증자 또는 지분 인수 등을 통해 지분을 취득하는 사원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보다 중요한 개정 내용은, 사업등록증에 회사의 목적 사업을 기재하지 않게 된 점입니다. 나아가 현행법상 투자허가서 또는 사업등록증에 명시된 목적 사업에 한하여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개정법에서는 삭제됨으로써, 6가지 금지된 사업분야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사업등록증을 신청할 때에는 영위하고자 하는 목적 사업을 기재하여야 하고, 사업등록증을 공시하는 National Information Website에 사업 내용을 공시하여야 하며, 영위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할기관과 National Information Website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목적 사업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투자허가서를 변경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기관 통지 및 공시만 하면 되는 점에서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다만 변경하는 사업 내용이 조건부 사업분야에 해당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여전히 투자허가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관 통지 및 공시한 사업 내용과 다른 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경우의 제재 조치가 개정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는 세부 규정의 입법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 복수의 대표자 선임

현행법상 회사 법적 대표자(General Director)의 수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실무 관행상 1인의 선임만 인정되어 왔습니다. 반면 개정법은 복수의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복수의 대표자 사이의 권한 행사 방법과 제약에 대해서는 회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복수의 대표자를 선임할 경우 그 중 최소 1인은 베트남에 상주하여야 하나, 부재 시에는 위임장을 통해 권한대행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대표자 선임이 허용됨으로써, 한국법에서와 같이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수의 대표자를 선임하면서 그 권한 행사 방식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중 어떤 쪽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임원 선임 통지

이사회 구성원, 감사위원 또는 감사인, 사장(General Director, 법적 대표자)을 선임할 경우 해당 인원의 인적 정보를 관할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종래에는 이러한 통지 의무가 없었으나 신설된 의무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장의 경우에는 사업등록증 변경도 필요함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한편 현행법의 시행령에서는 사원총회와 주주총회를 구성하는 투자자의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을 선임할 때에 관할기관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투자자 대리인 선임 시 통지 의무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시행령 등 세부 규정에서 어떻게 규정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인장 사용의 자유

현재는 공안국이 일관된 형태로 발급하는 인장을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회사가 인장의 형태와 번호 및 내용(단, 상호와 사업등록번호는 필수 기재)을 임의로 결정하여 관할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장을 날인할 것인지 여부는 관련 법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당사자들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자유로운 인장 사용을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거래 안전을 위하여 일반인도 회사 인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 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정법도 인장의 전자 등록 제도의 시행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이를 준비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자본금 납입 기한

현행 법령상 유한책임회사의 투자자는 투자허가서 신청 시 36개월 범위 내에서 정관 자본금을 분할 납입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관 자본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은 상태로 회사가 사업을 개시하여 부실화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개정 기업법은 사업등록증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관 자본금을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9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7) 1인 유한책임회사의 감사

현행법상으로 1인 유한책임회사는 감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8)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의 완화

개정법은 현행법과 비교하여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 및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다음과 같이 완화하였습니다.

	1인 유한책임회사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의사정족수	2/3	65%	51%
보통결의 정족수	과반수	65%. 단, 정관으로 변경 가능	51%
특별결의 정족수	과반수	75%. 단, 정관으로 변경 가능	65%
서면 결의	-	65%	-

현행 법령하에서도 외국인 투자법인은 정관으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단순 과반수 이상의 범위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순수국내법인에 대해서도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정관에 자율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다만 1인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정관으로도 위 정족수보다 낮게 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 결의 요건에 대해서도 1인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2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특별결의요건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서면 결의 시 65%로 가능한지가 의문입니다.

(9) 모회사 및 자회사 간 상호 출자 금지

개정 기업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모회사로 인정합니다.

- ① 다른 회사(자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
- ② 직·간접적으로 다른 회사(자회사)의 이사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권한이 있는 경우
- ③ 다른 회사(자회사)의 정관을 개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자회사는 모회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동일한 모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간에는 상호 출자가 금지됩니다. 개정 기업법의 발효 전에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발효 후에 기취득 지분을 처분할 필요는 없으나, 추가 취득은 금지됩니다.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

최고인민법원, 인터넷 인신권 침해 민사분쟁 사법해석 발표

지난 8월 21일, 최고인민법원은 「인터넷을 이용한 인신권 침해 민사분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용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을 발표하면서 이와 동시에 인터넷 인신권 침해에 관한 8개의 전형적인 판례도 공포하였습니다. '규정'은 총 19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는바 주로 (i)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대응하여 관할법원과 소송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ii)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침해를 인지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iii) 인터넷상의 정보를 재게재하는 행위에 대한 과실 및 그 정도의 판단 기준도 신설하였으며, (iv) 개인정보의 보호범위, (v) 불법삭제 등 인터넷 불법산업에 대한 책임부담, (vi) 피해자에 대한 사법보호 강화 조치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상장회사 폐지제도 정식 발표

지난 10월 15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상장회사 폐지제도를 개혁하고 엄격히 집행할 것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주식시장에서의 상장 폐지제도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번 폐지제도는 (i) 자진 상장폐지제도, (ii) 중대한 불법행위가 있는 상장사에 대한 강제 폐지제도, (iii) 거래기준 미달 시 강제 상장폐지 지표 엄격화, (iv)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여 폐지정리시기 설치, (v) 폐지회사 투자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 5가지 측면에서 개혁하였습니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대변인 장소진(张晓军)은 이번 상장폐지제도를 재정비함으로써 상장회사의 우열을 가리고 시장 효율을 향상하여 주식시장에 이성적으로 투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투자자들의 적법한 권리를 보호하는데 한층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개정안 공포, 외상투자 제한 대폭 감소

지난 11월 4일,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개정안을 발표하여 전 사회적으로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011년에 개정된 전 목록과 비교할 때, 이번 개정안은 제한류 조목을 기존의 79조에서 35조로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외자 지분비율에 대한 제한도 한층 줄였는데 “합자, 합작” 조목도 43조에서 11조로 축소되었고, ‘중국 측 지배지분’ 조목도 44조에서 32조로 축소되었습니다.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 목록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정 목록에 의하면 자동차전자, 기종기, 변전설비, 유명 배갈(白酒)간선철도, 지하철, 전자상거래, 토지개발 등 항목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취소함에 따라 내·외 자본에 대한 진입자격 차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발표, 지적재산권법원 관할 명시

지난 10월 31일,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적재산권법원 사건관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이 발표되었는데 주로 지적재산권법원의 사건관할 및 심급관계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지적재산권법원이 관할하는 1심 사건은 주로 아래와 같은 3가지 유형이 포함됩니다. (i) 특허 등 기술 유형의 민사 및 행정사건, (ii)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영역 중 행정결정 또는 처벌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사건, (iii) 유명상표인정 민사사건. 그 밖에,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의 전속 관할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였는데 주로 중앙 지적재산권 관리부서의 지적재산권 확인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베이징 법원에서 전속 관할권을 갖게 됩니다.

■ 최신 해외정보 - 캄보디아 ■

세무 등록에 관한 규정(PRAKAS on Tax Registration) 시행

캄보디아 재경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는 2014년 10월 9일 세무 등록에 관한 규정 (PRAKAS on No. 1139 on Tax Registration)을 공포하였습니다. 공포된 세무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자가 직접 세무 관서(Tax Department)를 방문하여 세무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 전산 등록기에 무인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 관서는 위와 같이 세무 등록 신청을 하면 신청 접수증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한편, 만일 회사의 대표자, 이사 또는 주주의 미납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 관서는 세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위 규정의 시행에 따라 세금체납자의 회사 설립을 차단할 수 있어 미납 세금 징수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